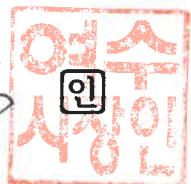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1 일

여 수 시 장 2022.12.01



여수시 조례 제1788호

불임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88호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수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

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합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8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 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 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